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4- 18 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조치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4월 22 일

우정사업본부장

여객선 침몰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보험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

1. 지원대상 :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지역(안산시, 진도군)우체국보험 고객

2. 지원내용

가. 보험료 납입 유예

- 유예기간 : '14. 4. 22. ~ 10. 31.
-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: '14. 11월 ~ '15. 4월 중 유예 받은 보험료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

나.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

- 유예기간 : '14. 4. 22. ~ 10. 31.
-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: '14. 11월 ~ '15. 4월 중 유예 받은 환급금 대출이자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

3. 접수방법

가. 우체국보험 고객

- 특별재난지역의 보험계약자임을 확인 후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

납입유예 신청서를 접수

나. 구비서류

-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
- 신분증 또는 재난지역 거주확인가능 서류

【붙임】

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

1. 계약내용

계약번호	계약자	상품명	보험료(대출이자)	최종 납입년월/횟수

2. 약정내용

제1조 2014년 10월 이후 해당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는 정상적으로 납입합니다.

제2조 2014년 10월까지의 납입 유예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는 아래와 같이 납입합니다.

유예 보험료 (대출이자)납입 월	2014. 11	2014.12	2015.1	2015.2	2015.3	2015.4
납입횟수/금액						

제3조(계약의 효력) 2014년 11월부터는 해당 월 보험료(대출이자)와 분할 납입으로 약정한 유예보험료를 상기 납입 월에 납입하며, 만약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를 약정한 납입 월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납입 월의 익월 1일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제4조(납입방법) 납입기일 까지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FC를 통해 납입하거나,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본인은 우체국과의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기의 각 조항을 확인하며,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4년 월 일

신 청 인	(인)	주민등록번호	-
주 소		전화번호	() -
피해내용			

OO 우체국장 귀하

접수자	직·성명	접수인	확인자	우체국장(인)